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징집·소집 연기 상한연령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
(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다른 보충역과 같이 복무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선함.

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등 규정(안 제124조의3)

- 1)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정함.
- 2)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2. ~ 4. 5.)

대통령령 제 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7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65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2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⑥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24조의3의 제목 “(체육선수의 입영 등 연기)”를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4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되,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에 따른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추천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대한체육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④ 제3항에 따라 연기 추천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연기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제2호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 ③ (생략)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지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	2.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

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신 설>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 5. (생략)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	람의 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사회복지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
--	--

소자 처리) ①·② (생략)

③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신설>

소자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⑥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제124조의3(체육선수의 입영 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7세의 범위에서 입영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기간을 단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24조의3(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에 따른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추천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별 연기 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의 전날까지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장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대한체육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④ 제3항에 따라 연기 추천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연기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대상자에게 통보해야	<신 설>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제2호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7